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IT검사국	담당자	안기복	연락처	
	무서	, /	선임검사역		
	□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통신망에 위치한				
	SaaS* 간에 DMZ 구간에 위치한 웹서버를 통해 API를 중계하는 방식으로				
요청대상	데이터를 실시간 송수신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				
행위	간의 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				
	*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 마케팅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특정 회사 전용이 아닌 다수의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
판단이유	□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 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 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,				
	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,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¹ 니다.	· · · · -			
	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DMZ 구간에 위치한 웹서버를 통해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서버와 외부통신망에 위치한 SaaS 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중계하는 것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의 통신으로 볼 수 있고,				
	○ 물리적 망분리 적용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.				

- ***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**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